

주택 및 민사 집행과는 이러한

연방 법을 집행합니다:

공정주택법 모기지 대출을 포함한 주택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.

공정신용기회법 신용 차별을 금지함.

1964년 민권법 타이틀 2 호텔, 식당, 나이트클럽, 극장 같은 공공 편의 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함.

종교적 토지 이용 및 수감자 법 종교 집회를 차별하거나 종교 활동에 도리에 맞지 않는 부담을 지우는 토지 이용 규정을 금지함.

군인 민사 구제법 군복무 중인 사람들에 대한 특정 민사 법적 보호 및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.

주택 및 민사 집행과는:

- ▲ **조사합니다** 위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별의 패턴이나 관행을 조사합니다
- ▲ **소송을 제기합니다** 위의 법령 위반에 대한 민사 구제를 추구하기 위해 미국을 대신하여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
- ▲ **소송에 개입합니다** 이미 제기된 소송에 개입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합니다
- ▲ **"법정 조연자"로 등록하여 브리핑으로 소송에 참여합니다** 민권법의 집행 또는 해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"법정 조연자"로 등록하여 브리핑으로 소송에 참여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:

주택 및 민사 집행과
미국 법무부 민권국
U.S. Department of Justice
150 M Street, N.E.
Washington, D.C. 20530

또는 본 과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세요:

<http://www.usdoj.gov/crt/housing>

이 안내서에 기술된 본인, 가족 또는 단체에 대한 차별 사건, 일련의 차별 사건, 또는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를 민권국에 온라인으로 신고 하시려면 민권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:

<https://civilrights.justice.gov>

(영어, 스페인어, 중국어 간체, 중국어 번체, 타갈로그어, 베트남어, 한국어로 제공)

또는 민권국에 전화하십시오:

전화: (202) 514-3847
무료: (855) 856-1247
TDD: (202) 514-0716

미국 법무부
민권국



주택 및 민사 집행과



주택

공정주택법(FHA)은, 42U.S.C. § 3601 et seq., 주택 공급자 또는 누구든 아래에 기술된 이유로 주택을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차별적인 계약기간 또는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:

- 인종; 피부색; 국적; 종교; 성별(성희롱 포함); 가족 구성원(한 명 이상의 18 세 미만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); 또는 장애

FHA 는 주택 매매 또는 임대, 주택 용자, 주택 보험 규정, 또는 주택 위치에 대한 지방 정부의 결정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택 관련 업무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. FHA 는 또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공정한 주거 권리를 억압, 협박, 위협 또는 방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.

주택 및 민사 집행과는 개인 또는 단체가 차별의 "패턴 또는 관행"에 관여 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거나 일반 공공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단체의 권리를 부인하는 경우 전국 연방 법원에서 FHA 에 따라 소송을 시작합니다. 본 과는 FHA 에 따라 차별 행위를 멈추게 하고 권리가 침해 된 사람들을 위한 금전적 또는 기타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본 과는 주택도시개발부(HUD)가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개별 차별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개시합니다.

불법 주택 행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차별 사건이 발생하거나 끝난 날로부터 **1년 이내**에 HUD에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용자

공정신용기회법(ECOA)은, 15 U.S.C. § 1691 et seq., 채권자가 아래에 기술된 이유로 신용 신청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:

- 인종; 피부색; 국적; 종교; 성별(성희롱 포함); 결혼 여부; 나이; 또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

ECOA 는 사람들이 신용대출 신청을 단념하게 하는 것(마케팅 및/또는 대출거부); 적격 신청자에 대한 차별적인 거부를 초래하는 기준 또는 방법 시행(언더라이딩); 그리고 보다 불리한 용자 조건(가격) 적용 등을 포함하는 용자신청 과정의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.

본 과는 개인 또는 단체가 차별의 "패턴 또는 관행"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ECOA 에 따라 소송을 제기합니다. 본 과는 ECOA 에 따라 차별 행위를 중단 시키고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금전적 또는 기타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군인 민사 구제

군인 민사 구제법(SCRA)은, 50 U.S.C. § 3901 et seq., 군복무 중인 사람들을 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.

SCRA 는 주거 및 차량 리스의 조기 해약, 차량 재소유, 부채 금리, 모기지 압류, 민사 사법 절차와, 개인 소지품 및 차량 경매와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.

군인은 우선 지역 군 법률 지원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 하지만, 군사적 법률 지원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, 개인이 군사 법률적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, 시간이 민감한 문제라면, 본 과는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불만 사항을 검토합니다. 본 과는 SCRA 에 따라 불법 행위를 종료 시키고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금전적 또는 기타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공공 편의 시설

1964 년 민권법 타이틀 2(Title II)는, 42 U.S.C. § 2000(a) et seq., 아래에 기술된 이유로 호텔, 식당, 그리고 영화관이나 나이트클럽과 같은 공공 오락 시설같은 특정 공공 편의 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:

- 인종; 피부색; 국적; 종교

본 과는 어떤 사람 또는 업체가 개인이 공공 편의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보호된 범주 내에서 다른 사람이 즐기는 공공 편의 시설에서 한 개인 또는 다수의 동일한 권리, 혜택 및 기회를 거부하는 "패턴 또는 관행"에 관련 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Title II 에 따라 소송을 시작합니다. 본 과는 Title II 에 따라 차별 행위를 중단 시키고 규정 준수를 위한 기타 구제를 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, 차별적 행위로 인해 상처 받았을 사람들에게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.

종교적 토지 이용

종교적 토지 이용 및 수감자 법(RLUIPA)은, 42 U.S.C. § 2000cc et seq., 지방 정부가 종교 집회를 차별하거나 종교 활동에 도리에 맞지 않는 부담을 지우는 토지 이용 규정을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
RLUIPA 는 종교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, 예배당을 비 종교 집회보다 덜 호의적으로 대우하거나, 종교간에 차별을 하거나, 또는 예배당을 배제하는 정부 활동이나 규정을 포함한 특정 지역 토지 이용 결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. 본 과는 RLUIPA 에 따라 차별 행위를 중단 시키고 규정 준수를 위한 기타 구제를 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, 차별적 행위로 인해 상처 받았을 사람들과 종교단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.